

사적 조정·중재 결정 신고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“√”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| 접수번호 | 접수일            | 처리기간 |
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
| 노동조합 | 조합명            | 대표자  |
|      | 소재지<br>(전화번호 ) |      |
| 사용자  | 사업장명           | 대표자  |
|      | 소재지<br>(전화번호 ) |      |

☐ 조정

위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노동쟁의를 사적

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로 결정하였기에

☐ 중재

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52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〇〇지방노동위원회 귀중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첨부서류 | 사적 조정인 또는 사적 중재인의 인적사항 | 수수료<br>없음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